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9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이인선・박충권・김성원

최은석 · 강대식 · 성일종

강선영 · 조지연 · 이종욱
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정경 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.

한편,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 외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,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는 양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·미개시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특허청장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조사・검사

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는 것임(안 제7조제5항 신설 등).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·검사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조사·검사가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.
- 1.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,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·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 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3.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,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제17조제4항 중 "제7조제5항을"을 "제7조제6항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>⑤</u>·<u>⑥</u> (생 략)

- 제17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~ ③ 제17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~ ③ (생략)
 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.
 - ⑤ (생 략)

이 있는 경우

- $\underline{6} \cdot \underline{7}$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- (현행과 같음)
 - 제6항을----.
 - ⑤ (현행과 같음)